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정수 증원〉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42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구 현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3. 30.
3. 회 부 일 : 2026.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음.

이러한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쟁조정 수요가 폭증하여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한편,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가 2017년 이후 8년 이상 동결되어 있는데, 동 기간 사건접수 규모는 약 5배로 급증함에 따라 상임위원 수 부족이 현 사건적체 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근본적인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및 국민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정수를 5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 ----- ----- -----9명-----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60조¹⁾에 따르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소비자분쟁조정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145인으로 구성되고²⁾, 조정위원회 회의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구분³⁾함.
-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

2)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3)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재한다.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① 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2.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4. 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 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5조의2(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①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에 따른 합의 권고 금액 2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에 따른 합의 권고의 내용이 물품의 교환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권고의 내용이 수리인 경우에는 물품의 수리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합의 권고 금액으로 본다.

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 소비자분쟁 중 200만원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및 집단분쟁조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함.

- 조정부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 분쟁조정회의 심의·의결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함.

□ 최근 분쟁조정 수요가 급증하여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조정의 필수 인력인 상임위원의 수가 2017년⁴⁾ 이후로 변동이 없어 회의 횟수 확대 및 신속한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최근 5년간 분쟁조정 관련 통계>

(단위: 건, 일)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접수 건수	4,803	4,118	6,390	9,731	13,671
처리 건수	4,229	5,065	5,128	6,969건	8,684
상임위원 인당 처리 건수	846	1,013	1,026	1,394	1,737
적체사건(연말)	2,505	1,558	2,820	5,582	10,569
평균 처리 기간	66	52	78	91	136

(자료: 한국소비자원)

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며, 위원 중 현재 2명인 상임위원의 수를 5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 제고(2017. 10. 31. 개정 및 시행)

- 이에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정수를 5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여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대응하여 소비자원의 사건처리 역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함.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개정안에 대하여 회의 개최 횟수가 확대되어 분쟁조정 사건의 처리 지연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소비자가 적시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용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5